2. 제철소 설비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성별	남성	나이	만 66세	직종	제철소 종사자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망 ○○○(사망당시 만 72세)는 1972년부터 1995년까지 약 23년간 □사업장의설비 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3년 02월 22일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고 2018년 06월 01일 다발성골수종을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근로자의 유족은 설비 수리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벤젠, 핵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이소프로필 알코올, 톨루엔, 자일렌 등의유기용제로 인해 "다발성골수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망 ○○○은 1972년 8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총 23년간 재직하였다. 기계수리공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입사할 당시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반장직을 거쳐 선강, 압연분야의 주임으로 재직하였다. 근로자가 재직하였던 기계수리계는 현재 중앙수리과로, 별도의작업 공장이 있으며 해당 공장은 1981년도에 지어졌다고 하였다. 전체 제철소의 각 공장의기계에 대해 지구정비팀에서 확인하여 정비가 필요한 기계가 확인될 경우, 협력업체에서 설비를분해하여 기계를 중앙수리과로 이송하면 중앙수리과 공장 내에서 설비를 세척 및 수리하였다. 기계의수리가 완료되면 현장에 설치할 때 중앙수리과에서도 해당 공장으로 가서 기계의 정합성을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협력업체 등에서 현장에 기계를 설치하면 중앙수리과에서 정밀장비로 정합성을 테스트한다고 하였다. 근로자는 선강, 압연 파트의 정비를 담당하였으므로주로 중앙수리과 공장에서 작업하였고, 제선공정, 제강공정, 압연공정에 해당하는 현장에서모두 작업할 때가 있었다.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전 소견

근로자 망 ○○○은 퇴직할 즈음(1995년)부터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일이 잦았다. 유가족 진술 상 우측 복부의 간헐적인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여러 대학병원에 내원하여서도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다하였으며, 몸이 불편하여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 재직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우측 복부의 통증으로 2012년 민간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뼈의 종양이 확인되었고, A대학병원에서 절제수술을 시행하였고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2012년 방사선치료, 2013년 이후로 항암치료를 시행하였고, 2015년 재발한 다발성골수종의 척추 경막외 종양에 대하여 방사선치료를 포함한 항암화학치료를 시행하였다. 2017년 다발성골수종의 늑골, 장골, 척추재발이 있어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고, 복시 증상으로 진행한 검사에서 다발성골수종 악화로 뇌신경을 압박하고 있어, 전체 머리뼈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A대학병원에서 다발성골수종에 대한 항암 치료를 지속하던 중 2018년 4월 좌측 위약감, 실어증이 있었고 뇌 MRI에서 뇌경색이 있었다. 항암치료를 지속하였으나 다발성골수종 소견이척추 및 골반뼈에 다발성으로 확인되며 뼈 이외에 위, 간, 방광, 우측신장, 척추 주변, 췌장 등과 다수 장기와 림프절에 종양이 있었고, 2018년 6월 1일 질병 악화 경과로 사망하였다. 유가족 진술에 따르면 흡연력 및 음주력은 없으며 암 질환 가족력은 없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망 ○○○(남, 1946년 생)은 2013년 2월 22일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72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5년까지 약 23년간 재직하였으며, 설비 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 상병의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벤젠, 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 등이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기계수리과(중앙정비) 및 공무과에 재직하며 약 16년(최소 7년, 최대 23년) 간 정비 작업을 수행하며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끝.